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 
제261회 임시회 (2023. 3. 31.)

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 
**검 토 보 고 서**



**행정건설위원회**

#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

행정건설위원회

전문위원 권 하 나

## 1. 제출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3-18
- 나. 제출자: 마포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3년 3월 17일(금)
- 라. 위원회 회부일자: 2023년 3월 22일(수)

## 2. 제출사유

가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는 천재지변, 지진, 풍수해, 벼락, 전화(戰禍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,

나. 사회재난\*에 해당하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\* 이태원 사고 해당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“특별재난지역”으로 선포('22.10.30.)

## 3. 주요내용

가. 감면대상자

-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  
(다만, 사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)

#### 나. 감면세목

- 재산세: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 (구세)를 면제한다.

#### 다. 기타

-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,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.
-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.

### 4. 관계법령

가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

나. 「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」 제2조(지방세 감면규모 등)

### 5. 검토보고

- 본 동의안은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, 사회적 재난 피해를 입은 이태원 참사(2022.10.29.)로 인한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한시적 시행에 앞서, 마포구의회 의 동의(의결)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.
- 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의 “이태원 사고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”<sup>1)</sup>에 따른 것으로,
  -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부모, 배우자 및 자녀, 그 부모,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를 대상으로,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하려는 것임

1) 「이태원 사고」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 통보(행정안전부, 지방세특례제도과-2488호, 2022.11.2.)

< 감면 지방세 종류 및 내용 >

세 목		부과대상	납기	비 고	
①	주 민 세 개 인 분*	• 사망자 가족 (개인, 개인사업자) *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사업소분 포함	8월	특별시세	
	자 동 차 세 소 유 분	• 사망자 가족 소유 자동차	6월, 12월	특별시세	
	재 산 세	• 사망자 가족 소유 토지·주택 등	7월, 9월	도 시 지 역 분	특별시세
				특 별 시 분	특별시세
자 치 구 분				구 세	
②	지 역 자 원 시 설 세	• 사망자 가족 (소방분)		특별시세	
③	취 득 세	•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	사망일부터 6개월 內	특별시세	

※ 특별시세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에서 “지방세 감면 동의안” 의결(2022.11.15.)

- 현재 마포구 희생자는 4명이나, 납세의무 확정(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)시 까지 소유권 변동,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 등의 변동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 추계는 어려움.

**▣ 마포구 지방세 감면 규모: 6건**

- 사망자: 4명, 유가족: 6명(사망자 중 2명의 부모는 공동지분 소유)

※ 자료출처: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추출 및 통보자료(지방세정시스템)

- 재산세과세기준일(6.1) 현재 소유권 변동,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, 2023년 재산세 관련규정 변경 등으로 변동 가능

- 한편, 본 지방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이태원 사고가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지방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.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 제4항2)에서 “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인정되는 자”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

2)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12. 27., 2015. 12. 29.>

언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<sup>3)</sup>는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”를 “지진, 풍수해, 벼락, 화재, 전화(戰火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”로 규정하고 있음.

- 서울시의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 제4항에 따른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”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 나목<sup>4)</sup>의 “사회 재난”도 포함되는 지 여부 질의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답변을 통해 “사회 재난”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바 있음.

▣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: 지방세특례제도과-531호(2020.3.10.)

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 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경우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 가목에 의한 “자연재난”만을 의미하고 있지 아니하고, **같은 법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른 “사회재난”도 포함되어 고려되어야 함**

- 참고로, 경기도의 경우 2015년 “사회재난”이었던 세월호 희생자·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에 대한 경기도의회 의결 선례가 있음.

※ 경기도 세월호 희생자·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(2015.5.28., 원안가결)

3)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(지방세 감면규모 등) ⑤ 법 제4조 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”란 지진, 풍수해, 벼락, 전화(戰禍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.

4)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”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

- 이태원 사고의 경우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“사회재난”으로, 서울특별시 용산구(이태원 관할지)가 2022년 10월 30일 “특별재난지역”으로 선포되었고, 행정안전부에서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시행한 바, “유사한 재해”에 해당함.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.
- 또한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 제3항<sup>5)</sup>에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이와 같이 검토한 결과,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을 실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5) **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)**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, 제3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,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3. 8. 6., 2014. 12. 30., 2017. 1. 17., 2020. 8. 18.>

6. **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·지방세, 건강보험료·연금보험료, 통신요금,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**

**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**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,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(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“지방세 감면”이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1. 서민생활 지원,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,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  2. 특정지역의 개발, 특정산업·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  3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-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(이 법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)을 하려면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·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.

**「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」 제2조(지방세 감면규모 등)**

-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”란 지진, 풍수해, 벼락, 전화(戰禍)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.
- ⑦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2. 30., 2020. 1. 15.>

**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(정의)**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”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  - 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  - 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

##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(재난의 범위)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나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
2.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